

1. 개정 이유

발주청은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제출서식을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신기술 지정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심사 수수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한액으로 조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함(안 제23조제1항 신설)
- 나. 발주청이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는 불가피 한 사항 규정 함 (안 제30조의2 신설)
- 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제출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 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시정·보완 요청 시 비용을 미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40조제3항 신설)
- 마.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한 직접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3조의2 개정)
-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79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 중 1차심사수수료, 2차심사수수료 금액을 낮추고자 함(안 별표9 개정)
- 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신기술사용협약서’(안 별지 제1호의3 개정),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안 별지 제1호의5 개정) 제출시 인감증서만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무실 또는 시험실
3. 대표자
4. 전문분야 및 세부분야
5. 기술인력
6. 장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을 삭제 한다.

제26조제1항에서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설기술용역비 감액 지급의 불가피한 사항)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각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해 건설기술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

제3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 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③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보완 등 요청한 경우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제2호의 “제23조제2항에 따른”을 “제2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표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신청·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 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0,000원
1차심사수수료	1,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000,000원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붙임으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하단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7호의1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의 “작성방법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
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를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
재합니다.”로 하며,

3쪽 중 제3쪽 하단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신설,
제40조의제3항 개정규정은 2021. 4. 20.일부터 시행한다.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각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해 건설기술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p> <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p> <p>3.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p>	사항 규정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② (생략) <신설>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 서식에 따른다.	○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제출 서식명시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 법제48조제3항 개정(2020.10.20.)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를 미지급 할 수 있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1.5. (생략) ② (생략) <신설>	----- ----- ----- -----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보완 등 요청한 경우	는 불가피한 사항 규정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 ----- ----- ----- ----- ----- ----- -----	○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경력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

<p>다) <신 설></p> <p>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인[]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 <u>확인서</u>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u>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u>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p>	<p>2. <u>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u> 또는 <u>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u></p> <p>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인[]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 <u>확인서</u>, []<u>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u>, []<u>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u>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u>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u>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u>같은 할 수 있습니다</u>) 및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u> 또는 <u>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u>를 <u>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u></p>	
--	---	--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첨부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란 <u>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u></p> <p><신 설></p> <p>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 <u>확인서</u>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u>직</u></p>	<p><u>고시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u></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첨부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란 <u>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u></p> <p>2. <u>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u> 또는 <u>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u></p> <p>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 <u>확인서</u>, []<u>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u>, []<u>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u>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u>국</u></p>	<p>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확대</p>
---	--	--

<p><u>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u></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u>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같음 할 수 있습니다)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u></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p> <p>「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p> <p>「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제23조1항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p>
<p>[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p>	<p>[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p>	<p>○ 시행령 개정(2020.5.26.)에 따른 자구 수정 등</p>

<p>1쪽 하단 작성방법 1.~4. 생략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p> <p>[3쪽 하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1쪽 하단 작성방법 1.~4 (현행과 같음)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p> <p>[3쪽 하단] ----- 제45조제9항에----- ----- ----- ----.</p>	
--	--	--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현행)

1. 신기술 개요

- 가. 신기술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 나.
-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주)○○○(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붙임 인감증명서 각 1부.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개정)

1. 신기술 개요

- 가. 신기술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 나.
-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주)○○○(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현행)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측시
신고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4.5cm) 또는 사진인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군복무	① 기간 ~	구분	[]미필 []면제 []기타	
② 직무분야	*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			
③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④ 국가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기술자격				
⑤ 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div>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cm×4.5cm)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의 근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근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개정)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4.5cm) 또는 사진인쇄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군복무 ① 기간 ~ 구분 []미필 []면제 []기타			
② 직무분야	※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			
③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④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⑤ 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cm×4.5cm)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같음 할 수 있습니다)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현행)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개정)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변경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변경) 제출합니다.

1. 공사현황

공사명			
발주청		대표전화	
①사업규모		②공종	
사업위치			
③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 .

2. 건설사업관리계획

④ 건설사업 관리방식	<input type="checkbox"/>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input type="checkbox"/> 의무, <input type="checkbox"/> 임의,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부분)		
	<input type="checkbox"/> 건설사업관리 <input type="checkbox"/> 직접감독		
	<input type="checkbox"/> 단일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input type="checkbox"/> 통합 건설사업관리(개 공구)		
용역명		용역기간	. . . ~ . . .
⑤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input type="checkbox"/>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일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독자 : 인·일		
	<input type="checkbox"/> 대가기준 기본업무 준수 <input type="checkbox"/>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		

⑥ 대가 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직접인건비	원	직접경비	원(%)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	원(%)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원(%)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손해배상보험료	원	추가업무비용	원
합 계		원 (총 공사비의 %)		

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입찰방식		입찰 예정 일자
	<input type="checkbox"/> 공개경쟁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선정방식	<input type="checkbox"/> PQ평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인평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제안서평가 <input type="checkbox"/> 종합심사낙찰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술자문 심의	<input type="checkbox"/> 심의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심의일자 : . . .) <input type="checkbox"/> 제외		
용역평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시행 예정 시기 : . . .) <input type="checkbox"/> 제외		

3.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붙임서류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선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각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건설사업관리방식(④)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인 경우에는 해당 서식 전체를 기재하고, 직접감독인 경우에는 “1.공사현황, 2.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공사감독자 인·월수(⑤), 기술자문 심의”란만 기재합니다.
2. 1. 공사현황 항목 및 ⑥용역비 산출내역 작성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3. ①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km, 폭()m - 교량: 길이()m, 폭()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세대, 연면적()㎡, 층수()층 - 건축물: 연면적()㎡, 층수()층
4.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5. ③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④란의 건설사업관리방식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7. ⑤란의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작성 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선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입인원 내역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 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의 기본업무를 전부 적용할 경우 기본업무 준수를 선택하고, 일부 제외하는 경우 기본업무 조정을 선택합니다.
8. ⑥란의 대가 산출 내역은 ⑤란의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적용, 작성하여야 합니다.
9. 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3. 변경내용의 변경 후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